

여 수 시

여수시 공고 제2019-218호

제 목 :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해제 공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1월 23일

여 수 시 장

대 상 시 설			지 정 (해 제) 사 유	지정 등급	안전점검·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	비 고
시설(지역)명	소 재 지	소 유 자 (점유자·관리자)				
중방6교	여수시 화치동 257번지 일원	여수시 (도로시설관리과)	보수·보강공사 완료로 위험요인 해소, 재난위험시설 (D등급)에서 중점관리시설 (A등급)으로 조정	A	보수·보강 공사 후 정밀점검 완료	해제